唐代 '胡商'의 中國 內地 活動과 蕃坊

宋 眞*

머리말

중국의 황제지배체제는 이념적으로 주변국과의 동등한 교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타국과의 교류는 '朝貢'과 '冊封'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즉, 주변국과의 문물교류는 天下의 중심인 天子에 대해 諸 蕃國들이 朝貢의 禮를 갖추면, 이에 대해 天子가 施惠하는 형식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각 시대마다 接邊 지역 관리 방식에 차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내지 상인은 변경을 넘어 사사로이 타국과 교역할 수 없었다. 漢代 본격적인 실크로드 개척 이후 서역 상인들이 貢納을 명분삼아 중국과 교류하거나, 공식 사신단에 상인들이 속해 있었던 이유는 이런 배경 하에서 이해할 수 있다.[1] 魏晉南北朝 시기를 거치면서 서역인들의 중국 내지로의 이동은 더욱 많아졌다. 이 시기 외국인의 내지 통행 문제가 어떻게 규정되었는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 발견된 통행 문서의 殘片에 敦煌太守가 관리 책임자로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변경 관리의 관할 하에 변경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2] 唐代에 이르면 서역 상인을 비

*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강사

1) 拙稿, 「漢代 通行證制度와 商人의 移動」, 『東洋史學研究』 92, 2005, pp.103-106.

2) 이 시기 상인들의 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荒川正晴, 「魏晉南北朝隋唐期の通過公証制度と商人の移動」, 中國史學會 編, 『(第1回中國史學國際會議研究報告集) 中國の歷史世界: 統合のシステムそ多元的發展』, 東京都立大學出版會, 2002; 程喜霖, 『唐代過所研究』, 中華書局, 2000, pp.39-54' 참조.

롯한 외국인들이 내지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출입 목적과 신분 및 소지한 물건 등을 자세히 檢驗한 후 통행 허가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전시기와 다른 唐代 외국인 출입 관리 방식은 당시 長安이 국제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었던 전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서역 지역과 중국과의 교류 역시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東魏-北齊 시대 이른바 서역인들이 일정한 정치 세력으로 등장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이들 서역인은 넓은 의미에서 소그드계에 속한 사람들로,[2] 소그디아나 지방에 존재하였던 昭武九姓國 출신들이다. 510~563년경 소그디아나 지역은 헤프탈족(hephthalite)의 침입으로 그들의 지배하에 있다가, 563년 다시 突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3] 이러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다수의 소그드인들은 突厥 혹은 중국 내지로 이주하기 시작하였다. 즉, 6세기 소그드인들은 본국의 혼란을 피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北朝의 각 왕조에서는 대규모로 증가한 소그드인 관할을 위해 薩寶를 설치하여 그들의 촌락을 관리하였다.[4] 이들 '西胡'들은 문헌기록에서 종종 '(西域)商胡' 혹은 '富胡'라 칭해진다.[5] 그것은 '西胡' 곧 소그드인이 관여했던 대표적인 영역이 상업이었고, 상업을 통해 부유해진 자들이 다수 존재했기 때문일 것이다.[6] 특히

---

2) 朴漢濟,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胡漢葛藤과 二重構造-」, 서울大學校 東洋史硏究室 編, 『分裂과 統合-中國中世의 諸相』(지식산업사, 1998), p.202.

3) Marshak. Boris I., "The Sogdians in Their Homeland", Juliano, Annette L·Lerner, Judith A, *Monks and merchants: Silk Road treasures from Northwest China Gansu and Ningxia 4th-7th century,* (New York: Harry N. Abrams with the Asia Society, 2001), pp.233-234.

4) 荒川正晴, 「北朝隋·唐代における'薩寶'の性格をめぐつて」, 『東洋史苑』 50·51 合併號, 1997, p.176.

5) 『魏書』(中華書局 標點校勘本, 이하 正史 동일) 卷19上, 景穆十二王列傳 7上, 京兆王傳, p.445, "仲景弟暹, …欲規府人及商胡富人財物."; 『魏書』 卷46, 列傳 34, 李訢傳, p.1040, "自是遂有驕矜自得之志. 乃受納民財及商胡珍寶."; 『北齊書』 卷34補, 列傳 26, 楊愔傳, p.457, "愔嘗見其門外有富胡數人."

6) 재부를 축적한 商胡들 중에는 심지어 富家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관리들을 통

소그드계 '胡商'[7]들은 吐谷渾 및 突厥과의 중계무역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는데, 북방의 柔然과 突厥을 매개로 서역 각국은 물론 동로마제국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하였다.[8] 한편 651-789년 동안 大食[9]에서는 36차례 중국에 사신을 보내어 공식적인 교류를 요청하였고, 이후 唐과 이슬람 국가는 수차례 사신을 파견하며 우호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7세기에 실론(Ceylon)에는 무슬림 상인의 거류지가 존재하였고, 이곳을 중개지로 중국 상인과 이슬람 상인들의 적극적인 교역이 시작되었다. 8세기 이슬람 상인은 본격적으로 廣州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슬람 지역과 중국의 교역은 더욱 활발해졌다.[10]

지금까지 唐代 '胡商'들의 對中 무역이나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선 北朝이래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 무역을 주도했던 소그드상인에 대한 연구가 있다.[11] 특히 소그드 상인

하여 그 利息을 받아내려던 자들도 있었다(『北齊書』 卷42, 列傳 34, 盧潛傳, pp.555-556, "逮天統·武平中, 徵稅煩雜. 又高元海執政, 斷漁獵, 人家無以自資. 諸商胡負官責息者, 宦者陳德信縱其妄注淮南富家, 令州縣徵責.").

7) 본고에서는 소그드계 商人과 아랍 출신 이슬람 상인을 포괄하여 '胡商'이라 칭하였다.

8) 朴漢濟, 「東魏·北齊時代의 胡漢體制의 展開-胡漢葛藤과 二重構造-」, pp.201-202.

9) '大食'은 'Tajik'의 音譯으로 고대 아랍인에 대한 칭호로서, 문헌 중의 '大食'은 아랍 제국을 가리킨다 할 수 있다(王東平, 「唐宋穆斯林史實雜考」, 『回族研究』 2004-1, p.31).

10) E. Ashtor, *A Social and Economic History of the Near East in the Middle Ag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pp.107-108.

11) 陳海濤, 「漢唐之際粟特地區諸國與中原王朝的關係」, 『敦煌學輯刊』 1999-1; 陳海濤, 「唐代入華粟特人商業活動的歷史意義」, 『敦煌學輯刊』 2002-1; 陳海濤, 「唐代之前民間中亞粟特人的入華」, 『史學月刊』 2002-4; 山下將司, 「新出土史料より見た北朝末·唐初間ソグド人の存在形態-固原出土史氏墓誌を中心に」, 『唐代史研究』7, 2004; 荒川正晴, 「北朝隋·唐代における'薩寶'性格をめぐつて」, 『東洋史苑』 50·51, 1997; 荒川正晴, 「唐帝國とソグド人の交易活動」, 『東洋史研究』 56-3, 1997; 荒川正晴, 「ソグド人の移住聚落と東方交易活動」, 『(岩波講座) 世界歷史』 15, 1999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중국의 연구 성과는 '程越, 「國內粟特研究綜述」, 『中國史研究動態』 1995-9' 참조.

의 무덤이 발견되면서, 당시 중국에 거주했던 소그드인들의 활동 양상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7세기 이후 해상 무역로 발달에 주목하여, 항해 기술·해로 검증 등을 고찰한 연구도 있다.[12] 이들 연구는 중국 내지에서 활동한 무슬림의 기록을 소개하면서 이슬람의 전파 혹은 回族과 연결하여 분석하고 있다.[13] '胡商'들의 거류지인 '蕃坊'[14], 중국에서의 법적 지위[15], 대외 무역 관리에 관한 분석[16] 등 '胡商'들의 중국 내지 활동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 분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 세부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이외에 胡商들이 唐帝國의

12) 李柏槐, 「古代印度洋的交通與貿易」, 『南亞研究季刊』 1998-2; 葛金芳, 「兩宋東南沿海地區海洋發展路向論略」, 『湖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3-3.

13) 黃運海, 「我國中南地區城市回族來源探討」 『貴州民族研究』 1991-3; 納麒, 「從回族角度談伊斯蘭教的中國化」, 『回族研究』 1999-4; 馬建釗, 「廣州回族社區的形成與變遷」, 『甘肅畜牧獸醫』 1996-4; 魯忠慧, 「試析唐宋時期回回先民的國際婚姻:蕃漢通婚」, 『寧夏社會科學』 2001-5; 範立舟, 「論宋元時期的外來宗教」, 『宗教學研究』 2002-3; 周傳斌, 「西海固伊斯蘭教的宗教群體和宗教組織」 『寧夏社會科學』 2002-5; 高占福, 「曆史上伊朗伊斯蘭文化對中國穆斯林社會的影響」, 『回族研究』 2003-3; 楊經德, 「伊斯蘭法中國本土化與回族伊斯蘭習慣法的形成」, 『思想戰線』 2003-6.

14) 穆寶修, 「唐宋時期穆斯林的來華和留居」, 『雲南社會科學』 1985-5; 麻健敏, 「略述南宋對泉州蕃客的政策-兼論阿拉伯商人對繁榮泉州所起的曆史作用」, 『中央民族大學學報』 1990-6; 馬娟, 「唐宋時期穆斯林蕃坊考」, 『回族研究』 1998-3; 葛奇文, 「"蕃坊"社區模式與澳門模式」, 『萍鄉高等專科學校學報』 2000-3; 湯開建, 「明代管理澳門仿唐宋"蕃坊"制度辯」, 『西北民族學院學報』 2001-2; 劉莉, 「古代回坊的形成與發展」, 『青海民族研究』 2004-3.

15) 高樹異, 「唐宋時期外國人在中國的法律地位」,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1978-1; 張中秋, 「唐代對外貿易的法律調整述論」, 『江海學刊』 1996-1; 邱樹森, 「唐宋"蕃坊"與"治外法權"」, 『寧夏社會科學』 2001-5; 章深, 「宋代外商城市居住權探析」, 『開放時代』 2002-6; 譚光亞, 「唐朝的外貿及其立法」, 『中國遠洋航務公告』 2003-12.

16) 黃純豔, 「宋代來華外商述論」, 『雲南社會科學』 1997-4; 黎虎, 「唐代的市舶使與市舶管理」, 『歷史研究』 1998-3; 章深, 「宋朝與海外國家的貢賜貿易」, 『學術研究』 1998-6; 邱樹森, 「宋代的外貿與"蕃商"」, 『江蘇商論』 2003-6; 楊家俊, 「簡論宋代的外商政策」, 『重慶廣播電視大學學報』 2004-1; 楊文新, 「宋代市舶司研究」 陝西師範大學 2004年 博士論文; 景兆璽, 「唐朝與阿拉伯帝國海路貿易的發展及其原因探析」, 寧夏大學 碩士論文, 2004.

제도 하에 활동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은 부족하다. 즉, 아랍·페르시아 혹은 소그디아나 지역에서 출발한 胡商들이 중국에 입국하여 활동할 때 거쳐야 하는 현실적 필요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다.

唐代 律令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은 비록 많지 않지만, 互市 및 변경 관리에 대한 조항이나 외국인의 通關 문제에 대한 내용을 통해 '胡商'들이 내지에서 활동할 때 어떤 제도적 제약을 받았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唐代 律令에 보이는 외국인 관련 규정을 모아 정리한 연구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17] 또한 최근 공개된 宋 天聖令 중에는 宋令 이외의 唐令이 포함되어 있어, 唐·宋간의 변화 양상은 물론 唐代 관련 규정들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육로로 통행한 '胡商'들이 사용했던 통행 허가문서는 당시 중국 내지에서 활동하기 위해 어떤 입국 절차를 거쳐야 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荒川正晴의 唐代 교통망 연구를 기반으로 유통 시스템을 분석 정리한 일련의 연구나[18] 唐代 過所 문서를 분석한 연구는[19] 실제 '胡商'들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기초가 된다.

흔히 唐帝國을 일컬어 '열린 제국'이라 한다. 이전 시기에 비해 唐代는 많은 외국인들이 중국 내지에 와서 활동하였으며, 당시 長安은 국제도시의 풍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唐代의 律令體制 하에 외국인의 활동은 자유롭지만은 않았고, 여러 제도적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20] 때

17) 全永燮, 「唐 前期 外來人의 生活과 律令(上)」, 『中國史硏究』 31, 2004; 全永燮, 「唐 前期 外來人의 生活과 律令(下)」, 『中國史硏究』 32, 2004; 鄭顯文, 『唐代律令制硏究』 「第五章 律令制下的唐代涉外法律」, 北京大學出版社, 2004.

18) 荒川正晴, 「唐朝の交通システム」, 『大阪大學大學院文學紀要』 40, 2000; 荒川正晴, 「唐代前半の胡漢商人と帛練の流通」, 『唐代史硏究』 7, 2004.

19) 程喜霖, 『唐代過所硏究』, 中華書局, 2000.

20) 기존에 唐代 외국인의 활발한 내지 활동을 강조하면서, 唐의 제도적 통제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律令制 하에서 외국인들의 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崔宰榮, 「8-9世紀 唐朝의 蕃坊 運營과 在唐新羅人 社會-唐朝의 외래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통제양상 비교」, 해상왕장보고연구회, 『대외문물교류연구』 3, 2004 참조).

문에 당시 제도 속에서 '胡商'들의 활발한 활동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21] 이런 점에서 본고는 기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唐代 律令體制 하에서 중국 내지에 들어온 胡商들이 무역 활동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으며, 그 활동 양상이 어떠하였는가를 입국 절차, 市에서의 교역, 체류 방식의 순서로 살펴보고자 한다.

I. 入國 절차와 通行許可

'胡商'들이 중국에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고대로부터 발달한 실크로드로서 험난한 사막을 가로질러 중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소그드상인들이 주로 이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지중해에서 홍해 및 아라비아해를 지나 인도양과 서태평양에 이르는 해상 무역로인데, 이슬람 상인들의 주된 경로였다. 여기서는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入國 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1. 陸路를 통한 入國과 通關 절차

일단 중국과의 공식적인 교류를 위해 중국에 들어오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했다. 외국 조공 사절을 맞는 일은 禮部 主客郎中이 담당하였다. 외국인이 변경에 도착하면, 우선 변경의 해당 州에서는 그 인원을 물어 牒을 발급해주었다.[22] 만약 사절단에 수행인이 있으면 그 반은 변경에 머물게 하고,[23] 朝貢을 바칠

21) 이런 관점에서 唐代 외국인에 대한 여러 제도를 고려하면서 揚州에 형성된 외국인 사회를 분석, 고찰한 '金相範, 「唐代 後半期 揚州의 發展과 外國人社會」, 『中國史硏究』 48, 中國史學會, 2007'은 의미가 있다.

22) 『新唐書』 卷46 百官志1 禮部主客郎中, pp.1195-1196, "主客郎中·員外郎各一人, 掌二王後·諸蕃朝見之事.…殊俗入朝者, 始至之州給牒, 覆其人數, 謂之邊牒."

23) 『新唐書』 卷48 百官志3 鴻臚寺, p.1257, "海外諸蕃朝賀進貢使有下從, 留其半於境."

사람들만 내지로 이동하게 하였다. 황제를 알현할 때 客이 직접 바칠 물건을 들고 들어가며, 駝馬등은 朝堂에 진열하게 하였고, 진상하기 부족한 물건은 州·縣에서 보관하였다.[24] 공식 사절단의 경우 입국 절차나 이동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당시 지방과 중앙을 잇는 驛傳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절단은 驛傳을 이용하며 행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25]
그렇다면 공식 사절단과 동행하지 않은 일반 외국인도 변경을 넘어 중국 내지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일단 律令의 규정상 중국의 일반 백성은 사사로이 변경을 출입할 수 없었다. 다음의 규정을 보자.

① [律文1] 변경의 關塞를 넘어 건넌 자는 도형 2년에 처한다. 외국인(化外人)과 함께 사사로이 서로 교역하여 (서로) 사고 판 경우, 1척이면 도형 2년 반에 처하고, 3필마다 1등씩 가중하며 15필이면 加役流에 처한다.

[疏議1] 연변의 關塞는 華·夷의 (통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關塞를 넘어 건넌 자는 도형 2년에 처한다. …단, 연변의 關塞를 넘어 건넌 죄이므로 무겁다.…[26]

② [律文2] (사유가) 금지된 兵器를 (外化人에게) 사사로이 준 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함께 혼인한 자는 유형 2천리에 처한다.…

[疏議2] …만약 외국인이 넘어 건너와서 국경에 들어와 중국인과 교역한 자가 죄를 받는 것은 모두 중국인이 넘어 건너가서 교역한 죄

24) 『新唐書』 卷48 百官志3 鴻臚寺, p.1257, "凡獻物, 皆客執以見, 駝馬則陳于朝堂, 不足進者州縣留之."

25) 荒川正晴, 「唐朝の交通システム」, 『大阪大學大學院文學紀要』 40, 2000 참조.

26) 『唐律疏議』(劉俊文 撰, 『唐律疏議箋解』, 中華書局, 1996) 卷8 衛禁律, 越度緣邊關塞條, p.669, "[律文] 諸越度緣邊關塞者, 徒二年. 共化外人私相交易, 若取與者, 一尺徒二年半, 三疋加一等, 十五疋加役流. [疏] 議曰, 緣邊關塞, 以隔華夷. 其有越度此關塞者, 得徒二年.…但以緣邊關塞, 越罪故重."; 任大熙·金鐸敏 共譯, 『(譯註) 唐律疏議-各則(上)』,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7, p.2089. (본고에서 인용한 『唐律疏議』의 條文 해석은 '任大熙·金鐸敏 共譯, 『(譯註) 唐律疏議-各則(上)』,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7 ; 任大熙·金鐸敏 共譯, 『(譯註) 唐律疏議-各則(下)』,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8'을 따름)

> 와 같고, 곧 상주하여 勅을 기다린다. 국경의 출입은 公使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 단지 '넘어 건넌다'라고만 하고 '사사로이 건넌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만약 사사로이 건너서 교역하면 죄를 받는 것은 모두 같다. …또 主客式에 의하면 "외국의 客이 입조하면 길에서 客과 交雜할 수 없고, 또 客으로 하여금 (중국) 사람과 대화할 수 없게 한다. 州·縣의 官人은 만약 일이 없으면 또한 客과 서로 相見할 수 없다"라 하고 있다. 곧 이것은 국내의 官人·百姓은 客과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사로이 혼인을 맺으면 위의 법과 같다. 가령 외국인으로서 입조하여 머무는 것이 허용된 경우에는 혼인하여 妻妾을 얻을 수는 있지만, 만약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勅을 어긴 죄로 처벌한다.[27]

②의 疏議에서 보듯이 변경의 출입은 일반인에게 금지되었고, 공식 사신만이 절차에 따라 출입할 수 있었다. 일반인이 함부로 변경을 출입한 경우 ①에서처럼 도형 2년에 처해졌다. 외국인의 경우 역시 변경 출입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었고, ②에서 보듯이 변경을 함부로 출입했을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았다. 율령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 외국인은 사적인 목적으로 변경을 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된 문서를 보면 '胡商'의 경우 교역을 위해 중국 내지로 출입할 수 있었다. 吐魯番 문서 중 西州에서 過所를 신청한 사람 명단을 분석해 보면, 모두 27명인데 그 중 '興胡' 곧 '胡商'의 사례는 14건으로 52%를 차지한다. 물론 이들 '胡商' 중에는 羈縻州에 入籍되는 형식으로 중국의 '百姓'인 자들도 있지만, 중국에서의

---

27) 『唐律疏議』 卷8 衛禁律, 越度緣邊關塞條, p.670, "[律文] 其化外人越度入境, 與化內交易, 得罪並與化內人越度交易同, 仍奏聽勅. 出入國境, 非公使者不合, 故但云越度, 不言私度. 若私度交易, 得罪皆同.…又準主客式. 蕃客入朝, 於在路不得與客交雜, 並不得令客與人言語. 州縣官人若無事, 亦不得與客相見. 卽是國內官人百姓, 不得與客交關. 私作婚姻, 同上法. 如是蕃人入朝聽住之者, 得娶妻妾, 若將還蕃內, 以違勅科之."; 任大熙·金鐸敏 共譯, 『(譯註) 唐律疏議-各則(上)』, pp.2090-2092.

소속이 없는 자들의 過所도 있다. 阿斯塔那 29호 墓所에서 발견된 「唐垂拱元年康尾義羅施等請過所案卷」[28]은 좋은 예다. 이 문서는 모두 7장으로 내용에 따라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문서(<자료1> 64TAM29:17ⓐ, 95ⓐ)는 모두 14행으로, 일반적인 過所·公驗의 신청 형식과 같이 이름·나이 및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을 밝혀서 통행 허가증을 청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서는 垂拱 元年(685) 4월에 신청한 것으로, 翟那你藩이 통역하였고 같은 달 19일에 작성되었다. 5-8행은 신청자의 이름과 나이를 기록한 것인데, 일부 글자가 파손되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후술할 네 번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추정해보면, (5행) 康尾義羅施 30세·(6행) (불분명) 鉢 60세· (7행) 吐火羅拂延 30세·(8행) 吐火羅磨色多 35세임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9-12행은 過所 신청자들에게 질문하여 조사한 내용인데, 먼저 "過所를 신청함에 첨부한 관련 문서(來文)가 있는가? 대답을 해보라."하고 질문하였다. 조사한 결과(謹審) 康尾義羅施 등은 모두 서쪽에서 왔고 동쪽 지방으로 가서 교역하기를 원하며, 서쪽 지방에서 저지(遮得)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公文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고, (過所) 신청 내용을 保人들에게 물어보니 사실과 같았다며 13행에서 인준을 하고 14행에서 날짜를 적었다.

두 번째 문서(<자료2> 64TAM29:108ⓐ·ⓑ)는 모두 11행으로 첫 번째 문서와 형식이 유사하다. 1-3행은 날짜와 문서를 승인한 내역을 적었다. 이 역시 4월 19일에 작성한 문서이다. 4-7행은 過所 신청자의 이름과 나이를 기록한 것이다. 신청자는 (4행)□紇槎 55세·□篤藩 35세·□達年 36세·□延年 60세인 '興生胡' 4명이다. 吐魯番 문서 중 '興胡'라는 표현이 자주 보이는데, 이는 무역을 위해 중국에 들어온 '胡商'을 지칭한 단어로 보인다. 이어 8-9행은 신청자

28) 『吐魯番出土文書』 3冊(唐長孺 主編, 文物出版社, 1996), 文書 7, pp.346-350; 程喜霖, 「唐代過所研究」, pp.246-248.

들을 조사한 내용으로, "過所를 신청함에 어떤 公文이 있는가?"라고 물은 뒤 대답을 들어 조사한 결과 이들은 모두 서쪽에서 왔고, 이유가 분명치 않지만 이전에는 漢 官府에 過所를 청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保人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었으나, 일부 내용이 훼손되어 분명치 않다.

세 번째 문서(<자료3> 64TAM29:107)는 모두 8행으로 앞의 두 가지 문서와 마찬가지로 4월 19일에 작성되었다. 1행의 첫 3글자는 분명치 않지만 '你羅藩'으로 釋讀할 수 있으며, 첫 번째 문서 2행의 '翟那你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29] 즉, 통역인 '翟那你藩' 등이 살펴본(辨) 결과, 이상의 사람들은 家率을 이끌고 京師에 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죄를 지은 일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 保人들에게 범죄한 사실이 없는가를 물은 후 만약 이후에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다는 증언을 기록하였다. 6-8행은 기록한 날짜 및 인준 내역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첫 번째·두 번째 문서에서 過所를 신청한 '胡商'들 외에 동반 가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한 문서로서, 동행인에 대한 확인 절차로 보인다. 네 번째 문서(<자료4> 64TAM29:24·25)는 다시 두 장으로 나누어졌으며, 모두 25행이다. 1-5행은 保人들의 명단이다. 保人은 (1행) 庭·伊 百姓 康阿了·(2행) 伊州 百姓 史保 40세· (3행) 庭州 백성 韓小光 40세·(4행) 烏耆人 曹不那遮·(5행) 高昌縣 史康師 35세로서 모두 5명이다. 이들은 韓小光을 제외하고 모두 康·史·曹氏의 소그드계 성씨를 가진 사람들로 伊州·庭州·高昌縣에 편입된 소그드계 '百姓'이거나 烏耆人 曹不那遮와 같이 서역인이다. 6-18행은 신청한 사람들이 동반한 奴婢·인부 및 말의 수를 기록한 내용이다. 19-23행은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시금 신청한 사람들이 家率을 이끌고 京師로 가기 원하여 過所를 신청하는데, 이들이 말한 내용이 사

29) 程喜霖, 『唐代過所研究』, p.252.

실이며 범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過所 신청을 승인한 기록이다.

곧 「唐垂拱元年康尾義羅施等請過所案卷」은 西州 以西 지역에서 온 '興胡'들이 京師로 이동하기 위해 西州에 過所를 신청한 문서로서, 외국인이 공무 수행이 아닌 사적인 목적 하에 중국에 들어오고자 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이들 '胡商'들은 家率과 노비·인부 및 말 등을 대동하고 長安까지 장사하러 가기를 원하였다. 이에 대해 西州의 관청에서는 각자의 성명과 나이 및 동반한 사람과 화물 내역을 조사한 다음 보증인들의 확인을 받은 후 過所를 발급해 주었다. 『新唐書』에 변경의 州에서 '邊牒'을 발급해 준다고 한 기록은 바로 이와 같은 경우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邊關에서 신상 내역을 조사 받은 후 過所를 발급 받았다면, 이후 내지에서 경과하는 關所에서는 過所만을 제출하면 되었다. 다음의 규정을 보자.

> ③ 蕃客이 왕래하면, 그 裝重을 조사하고 關所 하나를 진입했으면 나머지 關所에서는 譏察하지 않는다.[30]
>
> ④ 蕃客이 처음으로 京師에 갈 때 처음 출발하는 州에서 過所를 발급하여 보내는데, 姓名·年紀·顔狀을 모두 갖추어 牒을 보내면 경과하는 關所에서 過所를 검사한다. 1物 이상의 (화물이) 있으면, 關司에서는 蕃客과 함께 官人이 내역을 모두 기록하여 소속 官司에 보고한다. 關所 하나를 들어간 이후에는 다시 檢驗할 필요가 없다. 만약 關이 없는 곳이라면 처음 경유하는 州·鎭 역시 이에 준한다. 關所를 나가는 날에는 客이 받은 賜物 및 소지한 衣物을 소속 官司에 모두 신고하고 過所를 제출한다.[31]

---

30) 『唐令拾遺補』(仁井田陞 著, 池田溫 編, 東京大學出版會, 1997), 關市令 補2, p.1395, "諸蕃客往來, 閱其裝重, 入一關者, 餘關不譏."; 『新唐書』 卷46 百官志1 刑部, p.1200, "司門郎中·員外郎各一人, 掌門关出入之籍及閑逮之物…蕃客往来, 阅其装重, 入一关者, 余关不讥."

31) 『天一閣藏明鈔本天聖令校證』(天一閣博物館·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天聖令整理課題組 校證, 中華書局, 2006) 下冊 校錄本, 「關市令」 宋6, p.306, 諸蕃客初入京, 本發遣州給過所, 具姓名·年紀·顔狀, 牒所入關勘過所. 有一物以上, 關司共蕃

이 규정에 따르면 邊境의 關所 혹은 州·鎭을 통해 중국에 들어온 蕃客들은 처음 통과하는 곳에서 신상 내역 및 입국 사유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過所를 발급 받은 후, 나머지 경로 상의 關所에서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받지 않아도 되었다.

2. 海上 貿易路와 入港 절차

고대 동서 무역은 주로 육로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7세기 이후부터 점차 해상로가 우세해졌다. 일반적으로 육로 무역상들은 낙타로 隊商을 형성하였는데, 隊商의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정한 형태가 있었다. 隊商 1인에 최소 단위인 낙타 20頭로 이룬 대열을 一練이라고 하고, 대개 300頭로 하나의 隊商을 구성하게 된다. 이 중 1/10은 隊商의 여행에 필요한 물자를 운반하고 나머지가 상품을 운반한다. 낙타 1마리당 약 300kg의 물품을 운반한다고 가정할 때, 일개 隊商에서는 81,000kg을 운반할 수 있다. 그러나 唐代 상선의 규모는 약 1,000톤급으로서 화물 운송능력이 60~70만kg에 달했다. 즉, 7세기 이후 상품 생산력이 발달하면서 공급량이 많아지고 항해술·조선술의 발달이 뒷받침되자, 동서 무역의 중심은 육로에서 해상로로 옮겨졌던 것이다.[32]

그렇다면 '胡商'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에 도착했을까? 현재

客官人具錄申所司. 入一關以後, 更不須檢. 若無關處, 初經州鎭亦準此. 即出關日, 客所得賜物及隨身衣物, 並申所屬官司出過所." 이는 비록 宋令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唐代 문헌에 유사한 규정이 확인되므로 唐令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이러한 해상로는 全長 15,000㎞(37,500리)로 추산되며, 그 형성 시기는 대체로 唐宋代이며(618~907), 발전기는 唐代 중후기를 포함하여 宋代까지이고(960~1279), 최고 전성기는 元, 明, 淸代(1271~1840)라 할 수 있다(姜長熙, 「南宋時代 福建地方의 海上交流와 香料貿易」,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3, pp.50-51 참고).

당시 이용하였던 해상 실크로드의 정확한 노선은 알 수 없다. 다만 『新唐書』 地理志 및 두 사람의 아랍 상인이 기록한 『中國印度見聞錄』[33]과 義淨의 『大唐西域求法高僧傳』 등에 8-10세기경 인도양 항로에 대한 기록이 있어 대략적인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新唐書』의 '廣州通海夷道'[34]가 비교적 상세한데, 그는 唐代 중국과 서아시아·南洋 지역의 원양항로에 대해 기본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였다. 첫 번째 항로는 廣州에서 출발하여 남해의 인도차이나 반도 동해안과 말레이 반도를 따라서 수마트라 동남쪽에서까지 항해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싱가폴 근처에서 북서쪽으로 가서 말라카 해협을 거쳐 다시 인도네시아 군도를 중개로 뱅골만을 횡단하고 인도 반도 남쪽까지 항해하다가 다시 인도 서해안을 따라 호르므즈 해협을 거쳐 페르시아만까지 도달한 후 티그리스만으로 가서 아랍의 바그다드에 도착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페르시아만 끝에 있는 오파라와 바스라항 사이에서 출발하여 다시 호르므즈 해협으로 가고 아라비아 반도 남해안을 따라, 홍해 입구까지 항해하

33) 이것은 두 명의 아랍 상인이 인도와 중국을 여행한 후 기록한 견문록이다. 두 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권은 익명의 저자가 851년 7월 5일-852년 6월 22일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인도와 중국의 관습이나 페르시아만에서 시작되는 해상로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내용이다. 제2권은 Abū Zayd라는 자의 기록인데, 黃巢의 亂에 대한 목격 기사가 포함된 것으로 미루어 그 즈음인 916년경에 쓰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료들과 비교해 볼 때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9세기-10세기에 걸쳐 중국·인도와 페르시아만 지역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원래 아랍어로 기록되었으나, 불어로 번역된 후 영어·중국어·일어로 번역되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중국어 번역본 서명인 '『中國印度見聞錄』'(Sauvaget, Jean, 穆根來 外 譯, 北京: 中華書局, 1983)으로 지칭한다. 문서의 내용은 英譯本 'Abū Zayd Ḥasan ibn Yazīd Al-Sīrāfī·al-tājir Sulaymān; Eusèbe Renaudot, *Ancient accounts of India and China, by two Mohammedan travellers, who went to those parts in the 9th century,* London, 1733(이하 '*Ancient accounts of India and China*'으로 약칭)'과 日譯本 '藤本勝次, 『シナ·インド物語』, 關西大學出版部, 1976' 및 中譯本 '『中國印度見聞錄』'을 참고하였다.

34) 『新唐書』 卷43下 地理志 7下, 廣州通海夷道, pp.1153-1154.

고 결국 아프리카 해안에 이르는 것이다.[35]

이 항로를 참고하여 10세기경 胡商들의 중국으로의 항해 노선을 추정해보면 '바그다드-페르시아(Siraf, Bassorah)-인도 西岸(쿠로인항)-실론-말라카 해협-수마트라-자바-越南 東岸-廣州' 순으로 연결해 볼 수 있다.[36] 아래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7세기 이래 '胡商'들은 인도양 무역로 상의 주요 무역항을 거쳐 중국에 이를 수 있었다.

<그림1: 618-1500년 사이 해상 실크로드 주요 무역항>[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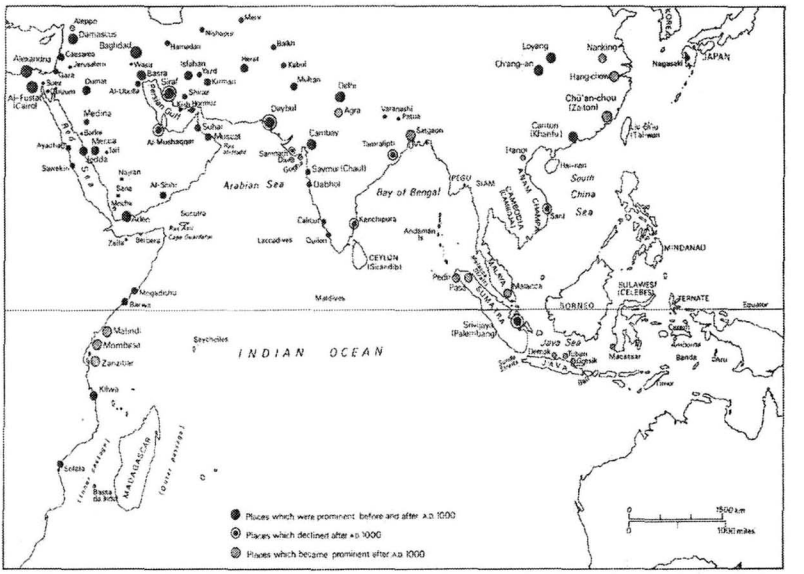

35) 姜長熙, 「南宋時代 福建地方의 海上交流와 香料貿易」, p.54; 景兆璽, 「唐朝與阿拉伯帝國海路貿易的發展及其原因探析」, 寧夏大學 碩士論文, 2004, pp.5-6.

36) 姜長熙, 「南宋時代 福建地方의 海上交流와 香料貿易」, pp.54-56.

37) K. N. Chaudhuri, *Trade and Civilisation in the Indian Ocean: An Economic History from the Rise of Islam to 1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p.38.

인도양을 건너온 '胡商'들은 중국과 무역하기 위해 중국 남해안의 항구에 정박했다. 唐代 해로로 들어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을까? 다음의 기록을 보자.

> ⑤ 해로를 따라 朝見하는 경우, 廣州에서 首領 1인·左右 2인을 뽑아서 입조시킨다. 바치는 물건은 먼저 그 수를 鴻臚에 보고한다.[38]
> ⑥ 顯慶 6년(661) 2월 16일 勅을 내리기를, '남쪽에 諸國의 선박이 있으면, 마땅히 담당 官司로 하여금 매년 4월 이전에 미리 支應해야 할 市物을 정하여 本道 長史에게 위임하여, 선박이 도착한 10일 내에 수량에 근거하여 값을 결정하여 구입한 후 百姓들로 하여금 교역하게 한다. 官의 市物은 少府監에게 보내고, (小府監이) 簡擇하여 진상하도록 한다.'라고 하였다.[39]

당시 주요 무역항이었던 廣州에 외국 상인들이 오면 그 중 대표 3명을 뽑아 그들만 京師로 가서 朝見할 수 있게 하였다. 顯慶 6년(661)의 勅에 따르면 남해안에 무역 상인들이 통상을 위해 찾아올 경우 담당 官司에서 필요한 물품을 미리 계획하였다가 상인들의 貨物 중 필요한 물자를 먼저 구입한 후 민간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도록 했다.

점차 무역항을 통한 외국 상인들의 내항이 잦아지면서, 체계적인 대외 무역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주요 무역항에 市舶司를 설치한 것은 바로 이런 필요에 대한 조치였다. 市舶司는 唐代 처음으로 설치되었고 그 정확한 기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開元 2년(714)에 周慶立이 市舶使로 임명된 사례를 볼 때 당 중기 이후부터 市舶司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40] 唐 왕조는 외국 상인과의 통

---

38) 『新唐書』 卷48 百官志3 鴻臚寺, p.1257, "蠻海路朝者, 廣州擇首領一人·左右二人入朝. 所獻之物, 先上其數於鴻臚."

39) 『唐會要』 (上海古籍出版社, 2006) 卷66 少府監, p.1366, "顯慶六年二月十六日勅, 南中有諸國舶, 宜令所司, 每年四月以前, 預支應須市物, 委本道長史, 舶到十日內, 依數交付價值. 市了, 任百姓交易. 其官市物, 送少府監簡擇進內."

상이 증가하자, 이들 '蕃商'들을 관리할 특별 관리 '結好使'·'押蕃舶使'·'監舶使'·'市舶使' 등을 파견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開元·天寶年間(713-755)에는 市舶制度의 기틀이 형성되었던 것이다.[41] 현재 문헌상에서 확인되는 唐代 市舶司로는 오늘날 베트남 북부인 交州와 廣州가 있다.[42] 交州와 廣州는 일찍부터 주요한 무역항이었는데, 唐代이래 廣州의 교역량이 交州를 능가하면서 廣州가 최대 무역항이 되었다.[43] 중국 연안에 도착한 이슬람 상인들이 가장 먼저 거쳐야 할 것은 바로 市舶司의 通官 절차였다.

唐代 시행되었던 市舶條例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지만, 市舶司에서는 일정한 통관 절차에 따라 외국 상인들을 檢驗하였다. 通關 절차는 크게 舶脚·閱貨·收市로 나눌 수 있다. 우선 '舶脚'은 외국 상선이 항구에 정박하면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閱貨'는 정박된 상선에 적재된 물건들을 항구의 관원들이 검열하여 반입 금지된 화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收市'는 상선의 화물 중에서 조정에 진상할 물건을 골라낸 후 그 나머지 화물을 收買하는 것을 말한다.[44] 이러한 唐代 입항 절차는 9세기경 중국에 왔던 아랍 상인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0) 黎虎, 「唐代的市舶使與市舶管理」, 『歷史研究』 1998-3, pp.21-23.

41) 姜長熙, 「南宋時代 福建地方의 海上交流와 香料貿易」, p.100.

42) 당시 揚州와 泉州 역시 외국 상인들이 많이 활동하였던 항구였으나, 唐代 이 지역에 市舶司는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黎虎, 「唐代的市舶使與市舶管理」, p.24, 注1' 참조.

43) 交州·廣州 이외 揚州와 泉州 역시 주요한 무역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슬람 상인들 중 揚州와 泉州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景兆璽, 「唐朝與阿拉伯帝國海路貿易的發展及其原因探析」, pp.10-11). 그러나 외국 상인들이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선 市舶司를 거쳐야 했는데, 揚州와 泉州에서 활동했던 외국 상인들은 交州·廣州의 市舶司를 통과한 후 공식 허가를 받아 이동했을 것으로 보인다.

44) 『唐會要』 卷66 少府監, p.1156, "顯慶六年…南中有諸國舶. 宜令所司. 每年四月以前. 預支應須市物. 委本道長史. 舶到十日內. 依數交付價值市了. 任百姓交易. 其官市物. 送少府監簡擇進內." 에서 외국 상인들의 화물에 대해 관리들이 관할하되 진상하지 않는 물건은 일반 百姓들과 교역하게 했음을 알 수 있다.

> 상선에 탄 사람들이 바다로부터 입항하면, 중국인이 그 상품을 취하여 창고에 들이고, 마지막 출항할 때까지 6개월간 그 상품의 보관을 보증한다. 그 때 모든 상품에서 3/10을 취하고, 나머지를 상인에게 준다. 그리고 [먼저] 官府에서 원하는 물건을 買上하는데, 최고가로 (값을 매겨) 즉시 지불해주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 官府에서 구매하는 상품 중 樟腦는 1mana마다 50 fakuges의 가격이 매겨진다. 1fakuges는 銅錢 1,000枚에 해당한다. 官府에서 구매하지 않는 경우 그 樟腦는 그 가격의 절반 값으로 시장에 출고된다.[45]

이 기록에 따르면, 입항한 외국 상선의 상품은 관리가 일괄 접수한 후 상품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세금을 제한 물건은 다시 상인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 모든 물건을 관리가 취하여 창고에 들였던 조치는 외국 상인의 화물 품목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하고, 市舶司에서 그 내역을 파악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閱貨의 과정인 것이다. 閱貨와 동시에 정박세를 징수하는데('舶脚'), 그 세율은 3/10이었다. 현재 唐代 세율이 어떠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당시 외국 상인에 대한 세율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화물의 조사나 관세 징수가 끝난 7/10의 상품은 상인이 판매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收市와 차이가 있다. 상인의 상품 중 官府에서 필요한 물건이 있는가를 살펴본 후 해당 물건을 최고가로 買上하는데, 이것은 官府 혹은 황제를 위해 단순히 진상하는게 아니라 바로 물건 값을 지불해주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구매 형식을 띤 것이었다. 官府의 구매가 끝난 후의 물건 값이 반값으로 하락한다는 표현은 당시 이슬람 상인들에게 있어 官府의 수요는 최대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

45) *Ancient accounts of India and China,* p.21; 藤本勝次, 『シナ·インド物語』, p.19.

市舶司의 이익에 눈이 멀어 담당 관리들의 횡포가 심해지자, 大和 8년(834) 市舶을 관할하는 관리들의 부정을 금하는 詔令이 반포되었다.[46] 그 중 '舶脚·收市·進奉'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하고 추가 세금을 징수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舶脚·收市 외에 황제에게 바치는 進奉이 별도로 정해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進奉 역시 고가로 매입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황제가 외국 상인에 대한 최우선 구매권을 보유했음은 분명하다. 이렇게 市舶司의 通關 절차를 거친 '胡商' 중 대표 3명은 京師로 가서 알현할 수 있었고, 나머지 인원은 무역항에 머물러야 했다.

Ⅱ. 賣買活動과 市券

육로 혹은 해로를 통해 중국에 들어온 '胡商'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온 물건을 '進奉'의 형태로 官府와 거래할 수 있었고, 그 나머지 물자는 시장에서 판매하였다. 唐의 법령에 의하면 중국 내지인과 외국인의 사사로운 교류는 금지되었고, 정해진 互市 규정에 따라 거래해야 했다. 다음의 규정을 살펴보자.

> ⑦ [律文]…외국인(化外人)과 함께 사사로이 서로 교역하여, 혹은 사고 판 경우에는 1척이면 도형 2년 반에 처하고, 3필마다 1등씩 가중하며 15필이면 加役流에 처한다.
>
> [疏議] …"化外人과 함께 사사로이 서로 교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市買·博易을 말하는 것으로서, 혹 외국인(蕃人)의 물품을 사거나 물품을 외국인에게 팔면 그 장물을 계산하여 1척이면 도형 2년 반에

46) 『唐大詔令集』卷10, 大和八年(834)疾愈德音, "南海蕃舶 本以慕化而來 固在接以恩仁 使其感悅 如聞比年長吏 多務徵求 嗟怨之聲 達於殊俗 況朕方寶勤儉 豈愛遐琛 深慮遠人未安 率稅猶重 思有矜恤 以示綏懷 其嶺南·福建及揚州蕃客 宜委節度觀察使 除舶脚·收市·進奉外 任其來往自為交易 不得重加率稅."

처하고 3필마다 1등씩 가중하며 15필이면 加役流에 처한다.[47]

⑧ [律文] (私有가) 금지된 兵器를 (外化人에게) 사사로이 준 자는 교수형에 처하고, 함께 혼인한 자는 유형 2천리에 처한다.…

[疏議] …또 主客式에 의하면 "외국의 客이 입조하면 길에서 客과 交雜할 수 없고, 또 客으로 하여금 (중국) 사람과 대화할 수 없게 한다. 州·縣의 官人은 만약 일이 없으면 또한 客과 서로 相見할 수 없다"라 하고 있다. 곧 이것은 국내의 官人·百姓은 客과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사로이 혼인을 맺으면 위의 법과 같다. 가령 외국인으로서 입조하여 머무는 것이 허용된 경우에는 혼인하여 妻妾을 얻을 수는 있지만, 만약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勅을 어긴 죄로 처벌한다.[48]

⑦의 규정은 불법적으로 邊關을 넘어 외국인과 교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疏議에서 밝힌 대로 외국인과 교역하였을 경우 거래 내역에 따라 형벌을 정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불법 입국·출국한 상태에서 교역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식 절차에 따라 입국한 외국 상인의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⑧에서 역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입국자가 본국인과 교역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으로 ⑦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다만 다른 格의 내용을 인용하여 외국인이 입조하여 머무는 것이 허용된 경우에 한해서 본국인과 혼인할 수 있으며, 그럴지라도 본국으로 妻妾을 데리고 갈 수 없음을

47) 『唐律疏議』 卷8 衛禁律, 越度緣邊關塞條, p.669, "[律文] 諸越度緣邊關塞者, 徒二年. 共化外人私相交易, 若取與者, 一尺徒二年半, 三疋加一等, 十五疋加役流 [疏] 議曰, 緣邊關塞, 以隔華夷. 其有越度此關塞者, 得徒二年. …若共化外蕃人私相交易, 謂市買博易, 或取蕃人之物及將物與蕃人, 計贓一尺徒二年半, 三疋加一等, 十五疋加役流."; 任大熙·金鐸敏 共譯, 『(譯註) 唐律疏議-各則(上)』, pp.2089-2090.

48) 『唐律疏議』 卷8 衛禁律, 越度緣邊關塞條, p.670, "[律文] 私與禁兵器者, 絞, 共爲婚姻者, 流二千里. [疏]…又準主客式. '蕃客入朝, 於在路不得與客交雜, 並不得令客與人言語. 州縣官人若無事, 亦不得與客相見.' 卽是國內官人百姓, 不得與客交關. 私作婚姻, 同上法. 如是蕃人入朝聽住之者, 得娶妻妾, 若將還蕃內, 以違勅科之."; 任大熙·金鐸敏 共譯, 『(譯註) 唐律疏議-各則(上)』, pp.2090-2092.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인과 중국 내지인은 길에서 교류할 수 없고, 지방 관리들도 공무가 없는 이상 외국인을 만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엄단의 조치로 보이는데, 중국 내지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 상인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조항으로 보인다. 律令 규정을 통해 볼 때 唐朝의 외국인 정책은 공식적인 허가 없이 중국 내지인과 교역하는 행위를 금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들어온 외국인의 경우 황제의 허락을 받아 州·縣의 市에서 거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특수한 경우이며 감독관의 입회하에 거래했던 것으로 짐작된다.[49] 일반적으로 '胡商'들은 변경에 설치된 互市에서 교역할 수 있었다. 互市는 관리의 관할 하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허가된 가격으로 거래해야 했다.[50]

한편 唐代 규정에 따르면 노비·말·소·낙타·노새·나귀 등과 같은 특수 물자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거래 증서인 市券을 작성해야했다. 다음의 규정을 보자.

> ⑨ [律文] 무릇 노비·말·소·낙타·노새·나귀를 사고 이미 값을 치렀는데도(過價), 市券을 만들지 않고 3일을 경과하였다면 태형 30대에 처한다. 판 자는 1등을 감한다.…
>
> [疏議] 노비·말·소·낙타·노새·나귀 등을 살 때는 令에 따라 모두 市券을 만들어야 한다. 쌍방이 매매에 동의하여 이미 값을 다 지불하였는데도 만약 市券을 작성하지 않고 3일이 지났다면 산 자는 태형 30대에 처하고 판 자는 1등을 감한다.…[51]

---

49) 全永燮, 「唐 前期 外來人의 生活과 律令(下)」, p.89 참고.

50) 『唐令拾遺』(仁井田陞 著,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64) 關市令 5, pp.715-716, "諸外蕃與緣邊互市, 皆令互市官司檢校, 其市四面穿壍, 及立籬院, 遣人守門, 市易之日卯後, 各將貨物畜産, 俱赴市所, 官司先與蕃人對定物價, 然後交易." 기타 외국인과의 교역에 관한 규정은 '全永燮, 「唐 前期 外來人의 生活과 律令(下)」, pp.87-96' 참조.

51) 『唐律疏議』 卷26 雜律, 買奴婢牛馬不立券條, pp.1871-1872, "[律文] 諸買奴

⑩ [律文] 만약 매매가 이미 끝났는데도 시장 주관 관원이 제때 市券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일이면 태형 30대에 처하고, 1일마다 1등씩 더하며 그 죄의 최고형은 장형 100대이다.

[疏議] 奴婢 및 소나 말 등을 매매하는데 값을 이미 다 지불하였는데도 시장을 주관하는 관원이 제때 바로 市券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일이면 태형 30대에 처한다.…[52]

이 규정에 따르면 노비·말·소·낙타·노새·나귀를 매매한 경우 3일 이내에 市券을 작성하여야 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매매한 사람은 물론 매매를 관리하는 市의 관리 역시 처벌을 받았다. 노비·말·낙타·노새·나귀 등은 '胡商'들의 주된 거래 품목이었기 때문에,[53] '胡商'들 역시 매매 후에는 市券을 작성해야 했다.

婢·馬牛駝騾驢, 已過價, 不立市券, 過三日笞三十. 賣者, 減一等.…[疏]議曰 買奴婢·馬牛駝騾驢等, 依令竝立市券. 兩和市賣, 已過價訖, 若不立券, 過三日, 買者笞三十, 賣者減一等.…."; 任大熙·金鐸敏 共譯, 『(譯註) 唐律疏議-各則(下)』, pp.3241-3242.

52) 『唐律疏議』 卷26 雜律, 買奴婢牛馬不立券條, p.1872, "[律文] 卽賣買已訖, 而市司不時過券者, 一日笞三十, 一日加一等, 罪止杖一百. [疏議]曰 賣買奴婢及牛馬之類, 過價已訖, 市司當時不卽出券者, 一日笞三十.…"; 任大熙·金鐸敏 共譯, 『(譯註) 唐律疏議-各則(下)』, p.3242.

53)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 講談社, 2007, pp.222-25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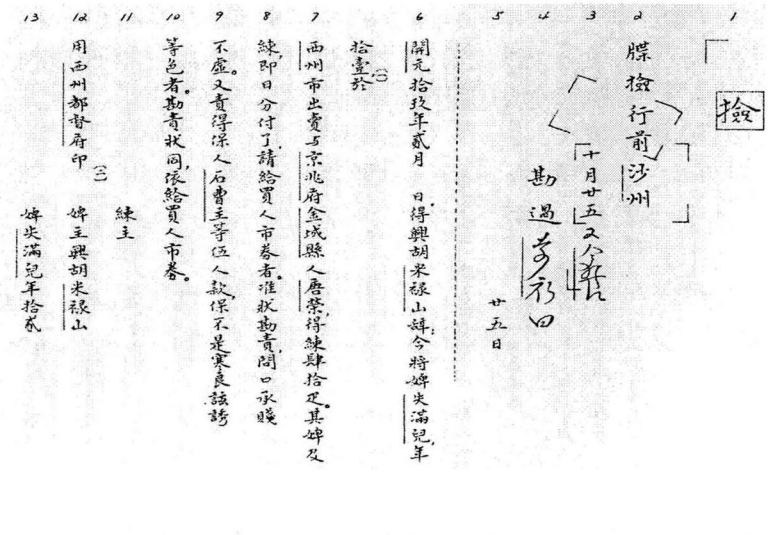

保人高昌縣石曹主年卅六·

保人同縣曹婆堪年卅八

保人同縣康薄鼻年五十五

保人寄住康薩登年五十九

保人高昌縣羅易沒年五十九

同元

史

巫上柱國玄亮

券

史竹無冬

위의 「唐開元十九年(731)唐榮買婢市券」[54] '胡商'과의 매매 거래 증서이다. 모두 22행으로 작성되었고, 10월 25일에 관리의 인준을 받은 문서이다. 6-10행의 내용은 매매 내역을 적어 市券을 만들게 된 근거를 기록하였다. 唐 開元 19년(731) 2월 某日에 興胡 米祿山은 자신의 婢 12세 失滿兒를 西州市에서 京兆府 金城縣 사람 唐榮에게 綀 40필을 받고 팔았다. 쌍방의 거래는 즉시 교환하였고, 이 거래에 대해 石曹主 등 伍人이 보증하였다. 12행에 '用西州都督府印'이라 적힌 것으로 보아 이 문서는 市券의 원본이 아닌 副本이다. 保人의 구성을 보면, 高昌縣 출신의 石曹主(46세)·曹娑堪(48세)·康簿鼻(55세)·羅易没(59세)과 寄住하고 있는 康薩登(59세)으로 5명이다. 이들 保人 역시 모두 소그드계 출신으로 高昌縣에 속해있거나 잠시 머물고 있는 자들로서, 興胡 米祿山의 보증인이 되었다. 이처럼 '胡商'의 주요 거래 품목인 말 등의 가축이나 노비의 거래 시 市券을 작성해야 했고, 매매 사실을 보증해 줄 보증인 역시 필요하였다.

Ⅲ. 保人확보와 蕃坊

唐代 외국 상인은 주로 京師로 가서 長安의 西市나 東市에서 활동하였지만, 해상 실크로드를 따라 온 상인들 중에는 京師로 가지 않고 항구 도시에 머물며 통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7세기경에 이미 廣州에는 이슬람 상인들의 집단 거류지가 존재했으며, 그 외에 揚州, 海南島 등지에도 '蕃客'들의 거류지가 존재하였다. '蕃客'들은 주로 항구 도시 주변에 일련의 무리를 형성하여 거주하였는데, 唐朝는 이들 거류지를 '蕃坊'이라 칭하며 그들의 자치조직을 인정해 주었다. 唐代 蕃坊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54) 『吐魯番出土文書』(唐長孺 主編, 文物出版社, 1996)4冊, p.264; 山根清志, 「唐代の奴婢賣買と市券」, 唐代史研究會, 『東アジア古文書の史的研究』, 刀水書房, 1993, pp.389-390.

않은 것을 볼 때, 초기 蕃坊은 국가에서 조직한 기구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형성된 이민족 거류지를 唐 정부에서 특별 주거지역으로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

北宋末에 쓰여진 周易의 『萍洲可談』에는 蕃坊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廣州의 蕃坊은 해외 여러 나라 사람들의 거주지로, 蕃長 1명을 세워 蕃坊을 관할하며 蕃商들에 대한 公務를 담당케 하였다. 蕃坊의 蕃人 중 범죄자가 있으면 廣州의 관청에 와서 심문을 받은 후 蕃坊으로 보내어 해당 형벌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하였다. 다만 徒刑 이상의 형벌일 경우 廣州 관청에서 판결을 내려 처벌하였다.[55] 이러한 법 집행의 자치권은 이민족은 그들의 자체 법에 따라 처리하였던 唐律의 원칙과 통한다.[56] 南宋 至德祐의 『攻媿集』에 보면 "蕃商들이 民間에 섞여 거하는데, (그들에 대해) 舊法에서는 郡의 사람과 다투어 싸웠을 경우 折傷 이하이면 모두 그 나라 풍속에 따라 牛로 贖罪하게 하였다."[57]라고 하였다. 廣州의 지방관으로 부임하였던 王渙之 역시 市舶使의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중국 법에 따라 '蕃客'을 처벌하기도 하였다.[58] 혹은 반대로 蕃長의 慘酷함을 피해 중국 법에 따라 처벌해 주기를 구하는 외국인도 존재하였다.[59] 그러나 蕃坊의 법적 자치권

---

55) 『萍洲可談』(『四庫全書』所載) 卷2, "廣州蕃坊 海外諸國人聚居 置蕃長一人 管勾蕃坊…蕃人有罪 詣廣州鞫實 送蕃坊行遣 縛之木梯上 以藤杖撻之…徒以上罪則廣州決斷."(띄어쓰기 필자)

56) 『唐律疏議』 卷6, 名例律, 化外人相犯, p.478, "[律文] 諸化外人, 同類自相犯者, 各依本俗法, 異類相犯者, 以法律論. [疏] 議曰, 化外人, 謂蕃夷之國, 別立君長者, 各有風俗, 制法不同. 其有同類自相犯者, 須問本國之制, 依其俗法斷之. 異類相犯者, 若高麗之與百濟相犯之類, 皆以國家法律, 論定刑名."

57) 『攻媿集』 卷88(『四庫全書』所載), "蕃商雜處民間 而舊法與郡人爭鬬 非至折傷 皆用其國俗 以牛贖罪" (띄어쓰기 필자)

58) 『宋史』卷347 王渙之傳, p.11001, "(王渙之)復徙廣州. 蕃客殺奴, 市舶使据舊比, 止送其長杖笞, 渙之不可, 論如法."

59) 『宋史』卷303 張溫之傳, p.10033, "(張溫之)徙廣南東路轉運使. 夷人有犯, 其酋長得自治而多慘酷, 請一以漢法從事."

은 이후 시기 治外法權과는 차이가 있다.[60] 『萍洲可談』에서 보듯이 형벌의 판결권은 지방관이 보유하였고, 徒刑 이상의 重罪者 역시 중국의 법 원리에 따라 처벌되었던 것이다.[61] 이렇게 蕃坊은 蕃商들의 자치구로서 일정한 법적 자치권을 확보한 반면, 중앙 정부의 통제 하에 있었던 외국인 거주지였다.

중국에 왔던 이슬람 상인들 역시 계절풍이 바뀌는 6개월 동안 중국에 단기간 체류해야 했는데, 蕃坊은 이들이 거주하였던 대표적인 장소였다. 물론 蕃商들 중에는 '土生蕃商', '住唐'이라 칭해졌던 장기 거주자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중국인 결혼하여 중국에 대대로 정착하기도 하였다. 무슬림으로서 당시 중국을 방문하였던 상인의 기록은 이들의 집단 내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 그 곳에는 한 사람의 이슬람교도가 있는데, 그는 다른 지방에서 온 이슬람교도들 간에 생기는 문제들을 판결하는 권한을 중국의 長으로부터 부여받았다.[62] 그것도 중국 황제의 의지에 따라 처리되었다. 그 사람은 祭日에 이슬람교도들의 예배를 인도하였고 금요일 예배 때 설교를 하였으며, 이슬람교도들의 술탄을 위하여 신에게 기도하였다. 그리고 Irak의 상인들도 진리에 맞게 또 신의 경전과 이슬람법에 기반한 그의 판정과 행위에 대해서는 그의 권한을 조금도 부정할 수 없다.[63]

---

60) 蕃坊은 흔히 이후 시기의 租借地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僑民의 자치 집단으로서의 唐宋시기 蕃坊은 여러 면에서 이후 시기의 租借地와는 구별된다(湯開建, 「明代管理澳門仿唐宋"蕃坊"制度辯」, 『西北民族學院學報』 2001-2 참조).

61) 번상 중에서 下獄된 사례도 있었는데, 이는 치외 법권과는 다른 면을 보여준다(康大壽, 「古代中國對在化外人的法律管理」, 『信陽師範學院學報』20-3, 2000, p.101 참고),

62) 蕃長은 蕃坊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중국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야 했다. 때로 황제의 특혜로 蕃長에 임명되기도 했던 예는(『唐會要』卷100, 歸降官位, p.1799, "天祐元年六月. 授福建道佛齊國入朝進奉使都番長蒲訶粟寧遠將軍."), 당시 蕃長이 단순히 자치조직의 長이 아니라 중앙 정부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자였음을 보여준다.

63) *Ancient accounts of India and China,* pp.7-8; 藤本勝次, 『シナ·インド物語』, pp.10-11.

여기에 언급된 蕃坊의 지도자는 이슬람교도들의 종교적 지도자이자, 재판과 민사를 담당한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다. 이 사람이 중국 정부로부터 그 권한을 인정받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蕃坊의 蕃長임을 보여준다. 그는 금요 예배의 설교를 담당하였고, 『코란』과 이슬람법에 따라 여러 문제들을 판단하는 재판관 역할을 하였다. 즉, 당시 蕃商들의 거주지였던 蕃坊은 이슬람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슬람 고유의 종교 양식을 지키며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안 주변의 이슬람인들 蕃坊 이외에 소그드인들의 집단 촌락인 '蕃坊' 역시 존재하였다. 北朝 이래 소그드인들은 내지에 촌락을 형성하여 거주하였다.[64] 唐代 소그드인들의 취락은 지방의 州·縣에 편입되었다. 예컨대 敦煌의 소그드인 거주지는 沙州 敦煌縣에 속하여 從化鄕을 구성하였고, 소그드인들은 일종의 '百姓'으로 분류되어 호적문서로 파악되었다. 특히 唐帝國은 주변 민족들을 羈縻州로 편성하여 간접 지배 형식으로 파악하였는데, 서북변에 존재하였던 소그드인들의 거주지 역시 羈縻州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그 결과 羈縻州에 속한 소그드인들은 唐帝國의 '百姓'에 준하게 되었고, 過所 발급과 같은 문서 행정상 절차에서 '百姓'으로 파악되었다.[6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市舶司의 공식 허가를 받은 蕃商들은 중국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蕃客'과 중국 내지인이 길에서 교류할 수 없다고 규정한 唐律의 조항은 당시 외국 상인의 활동이 그리 자유롭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당시 각 지역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官에서 발급한 過所 혹은 公驗[66]이 있어야 했다. 우선 외국 상인들은 入關 당시 정식 허가를

64) 拙稿, 「北齊 '西胡化'의 背景과 그 性格」, 『中國古中世史硏究』 15, 2006, pp.202-205 참조.

65) 荒川正晴, 『オアシス国家とキャラヴァン交易』, 東京: 山川出版社, 2003, pp.49-59 참조.

66) 公驗은 唐代 공문서 전반을 지칭했던 용어이지만, 통행에 필요한 문서 역시 때로 過所라 하지 않고 公驗이라 하였다.

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했다. 『中國印度見聞錄』의 기록을 보면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두 통의 공문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나는 總督[67]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문서로 여행자와 동반자의 이름, 여행자·동반자의 연령, 출신지역 등을 표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중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던지 모두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소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68] 즉, 통행 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된다는 말이다. 나머지 한 통은 太監으로부터 발급받는 문서로서 신청자가 소지한 금전 혹은 화물에 관해 조사하여 기록한 것으로, '○출신의 ○의 자식 ○가 ○년 ○월 ○일에 몸에 휴대하고 온 ○數目의 화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만약 화물을 분실하거나 사망할 경우 분실물을 찾거나 상속자에게 화물을 계승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였다.[69] 전자는 過所 혹은 公驗과 같은 통행증인데, 후자는 그 명칭이 불분명하다. 다만 過所 신청 시 동반한 화물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여 過所 발급의 근거 자료로 삼았던 점이나, 노예 매매 문서 등을 過所 신청 때 첨부하여야 했던 점 등을 미루어 화물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적은 문서를 過所와 함께 소지해야 했던 상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838년 7월부터 847년 9월까지 9년 2개월 동안 唐을 여행하였던 구법승 엔닌은 朝貢使에서 벗어나 구법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중국에 남기 위해 필요했던 公驗을 얻기 위해 그는 11개월 만에 여러 고생 끝에 겨우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한

67) 穆根來·汶江·黃倬漢 [共譯], 『中國印度見聞錄』, p.18에서는 '城市의 王爺'라고 번역하였다.

68) 穆根來·汶江·黃倬漢 [共譯], 『中國印度見聞錄』, p.18에서는 소속된 宗族이 어디인가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家譜와 씨족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69) 藤本勝次, 『シナ·インド物語』, pp.22-23; 穆根來·汶江·黃倬漢 [共譯], 『中國印度見聞錄』, p.18

통행증을 발급받는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아 여러 新羅人의 도움 끝에 겨우 통행증을 얻을 수 있었다. 그의 통행증 발급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가 공식 조공사절단에서 벗어나 그의 신분을 보장해 줄 어떠한 소속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통행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분 확보 이외에 반드시 신청자의 신분을 보장해 줄 보증인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知人이 필요하였다. 엔닌은 통행증 발급 과정에서 新羅坊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들의 주선과 보증을 통해 결국 통행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다.70) 『中國印度見聞錄』에서도 통행증 신청을 위해서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無論하고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해 줄 소속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胡商'들의 내지 통행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문제였다.

한편 '蕃商' 중 중국에 귀화한 사람들 역시 정부에서는 '化外人'으로 대우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일정한 거주 지역이 있고 자신들의 소속이 분명해진 사람들로서 내지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통행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그런데 단기간 중국에 머물면서 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슬람 상인의 경우 공식 사절단에 포함되어 움직이지 않은 한 그의 내지 이동을 위해서는 별도의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였다. 또한 그것을 위한 신분 보증 역시 요구되었다. 이러한 중국 내지 활동을 위한 신원 보증을 위해서는 중국 내지에 자신을 후원, 지지해 줄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였고, 그것이 없다면 엔닌과 같이 수년 동안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활동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슬람 상인의 통행 문제나 내지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있어 동일한 문화 배경을 가진 종족 집단은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

70) 이 문제는 '金鐸敏, 「在唐新羅人의 활동과 公驗(過所)-엔닌의 공험 취득 과정에서 張保皐·新羅人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외문물교류연구』, 해상왕 장보고 기념 사업회, 2002' 참고.

앞에서 살펴 본 「唐垂拱元年(685)康尾義羅施等請過所案卷」을 보면, 康尾義羅施의 통행증 발급을 위해 庭·伊州의 康阿了, 伊州의 史保, 庭州의 韓小光, 焉耆人인 曹不那遮, 高昌縣의 史康師 등 5명의 保人이 필요하였고, 이들 5명 중 韓小光을 제외한 나머지 4인은 모두 소그드계 사람들이었다. 또한 安西都護府 하의 焉耆都督府에 속한 曹不那遮을 비롯하여 모두 唐帝國에 속하여 정주하던 사람들이었다. 즉, 서역 상인 康尾義羅施의 내지 출입을 위해 내지에 거하던 서역인들이 연대 보증을 해 주었던 것이다. 이는 市券 작성 시에도 마찬가지였다. 「唐開元十九年(731)唐榮買婢市券」의 保人 5명 모두 소그드계 출신으로 高昌縣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다. 이들 내지 소그드인들은 중국 변경 지역의 羈縻州에 속하여 중국 내지와 소그디아나 지역을 이동하며 활동하는 '興胡'들이 연대 보증인이 필요할 때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분 보장이 필요한 過所 발급과 매매 증서 작성 시 保人이 된 경우,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져야 했다. 때문에 보증인과 피보증인 사이에는 사전에 신뢰 관계 형성이 필요하였다. 다음의 규정을 보자.

⑫ [律文] 무릇 (보증인이) 보증한 것이 보증한 내용과 같지 않으면 피보증인이 지은 죄에서 2등을 감한다. 만약 보증한 장물이 절도보다 무거우면 절도에서 감한다. 만약 가공의 인명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증한 자는 태형 50대에 처한다.

[疏議] 보증인은 모두 서로 (보증한 일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보증한 것과 본래의 죄상과 어긋난 것은 곧 "보증한 것과 같지 않은" 것으로, (이 경우) 피보증인이 지은 죄에서 2등을 감한다. "만약 보증한 장물이 절도보다 무거우면 절도에서 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도·枉法 및 공갈 등의 장물을 보증하였는데, 해당 조문에서 죄를 받는 것이 절도보다 무거우면 모두 절도에서 2등을 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무거운 장물(重贓)에서 감하지 않는 것은 원래 (죄의) 정상이 같지 않고, (또) 장물을 보증하였지 죄를 보증한 것이 아

> 니기 때문이다. "만약 가공의 인명이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증인으로 한 자"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쓰거나 혹은 함부로 타인의 姓으로 보증한 자를 말하며, 모두 태형 50대에 처한다. 다섯 사람이 함께 하나의 일을 보증한 경우, 이는 먼저 공동으로 계획한 것이므로 반드시 주동자를 首犯으로 하고 나머지는 從犯으로 처벌한다. 각각 독자적으로 보증 선 경우는 죄에 首從의 구별이 없다.[71]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거짓으로 보증했을 경우 보증인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過所나 市券의 말미에는 항상 保人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保人들로서는 처벌을 무릅쓰고 외부인을 위해 거짓으로 보증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외부에서 들어와 내지를 이동하며 교역 활동을 하기 원하는 '胡商'들은 이슬람 공동체와 같은 동질 집단 혹은 같은 언어·문화권에 속한 소그드인 '蕃坊'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지금까지 唐代 육로 및 해로를 통해 중국 내지에 들어와 활동했던 '胡商'들을 중심으로, 당시 대외 무역 관련 제도 속에서 그들의 내지 通商 활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唐의 律令體制 하에서 일반인의 사적인 국외 여행은 금지되었고,

---

71) 『唐律疏議』 卷25 詐僞律, 保任不如所任條, p.1763, "[律文] 諸保任不如所任, 減所任罪二等, 卽保贓重於竊盜, 從竊盜減. 若虛假人名爲保者, 笞五十. [疏] 議曰, 保任之人, 皆相委悉. 所保旣乖本狀, 卽是不如所任, 減所任之罪二等. 其有保贓重於竊盜, 從竊盜減, 謂保强盜枉法及恐喝等贓, 本條得罪重於竊盜, 並從竊盜上減二等. 不從重贓減者, 以其元不同情, 保贓不保罪故也. 若虛假人名爲保者, 謂假用人名, 或妄以他人姓字以充保者, 並笞五十. 有五人同保一事, 此卽先共謀計, 須以造意爲首, 餘爲從坐, 當頭自保者, 罪無首從."; 任大熙·金鐸敏 共譯, 『(譯註) 唐律疏議-各則(下)』, pp.3196-3197.

외국인 역시 內地 출입 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공무 수행을 위한 사절단 이외 '胡商'과 같은 상인들 역시 입국 목적이 분명하고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변경 지역에서 過所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唐令의 규정처럼 일단 關所를 통해 입국한 다음에는 처음 발급받은 過所를 소지하고 내지를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다만 過所 발급을 위해 자신의 소속이 분명해야 했을 뿐 아니라, 신분을 보장해 줄 保人 5명을 확보해야 했다. 過所를 신청할 때 保人 역시 동반해야 했으며, 이들의 신분 보증을 근거로 過所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胡商'들이 가져 온 화물 중 官府의 수매품 이외 남은 물품은 일반인과 교역할 수 있었는데, 말·노새·나귀 및 노비와 같은 특수 품목의 경우 매매 거래 후 반드시 市券을 작성해야 했다. 市券의 작성은 쌍방의 동의하에 市를 관할하는 관리가 작성하였는데, 이 때 역시 保人이 필요하였다.

唐律 규정 중 다른 사람을 위해 거짓으로 보증한 경우 보증인 역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외부에서 온 '胡商'이 내지에 거하는 保人을 확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吐魯番 문서 중 '胡商'의 過所 신청 문서와 市券의 保人은 모두 5명씩이었고, 거의 대부분 소그드계 사람이었다. 이는 '胡商'의 保人은 내지에 거주하거나, 僑州에 적을 둔 소그드인 및 이슬람인들 집단 중에서 정해졌음을 짐작케 한다. 당시 蕃坊의 형태로 해안 지역이나 내지에 거하던 서역 출신자들의 蕃坊은 '胡商'들의 중국 내지 활동의 근거지이자 필수 전제 조건이 되었다. 즉, 당시 律令體制 하에서 중국 내지에 거주하거나 장기 거류하고 있던 서역 출신자들의 집단 거류지('蕃坊')가 있었기 때문에, '胡商'들의 적극적인 중국 진출과 중국과 소그디아나·이란·아랍 지역을 연결하는 국제 교역망이 보다 활발하게 정착될 수 있었다.

○「唐垂拱元年康尾義羅施等請過所案卷」

1. <자료1> 64TAM29:17ⓐ,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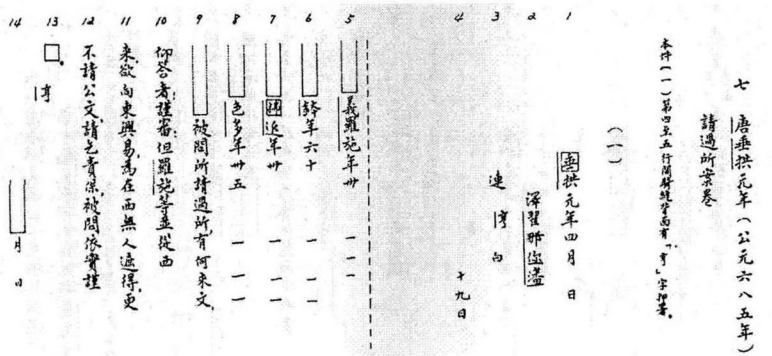

2. <자료2> 64TAM29: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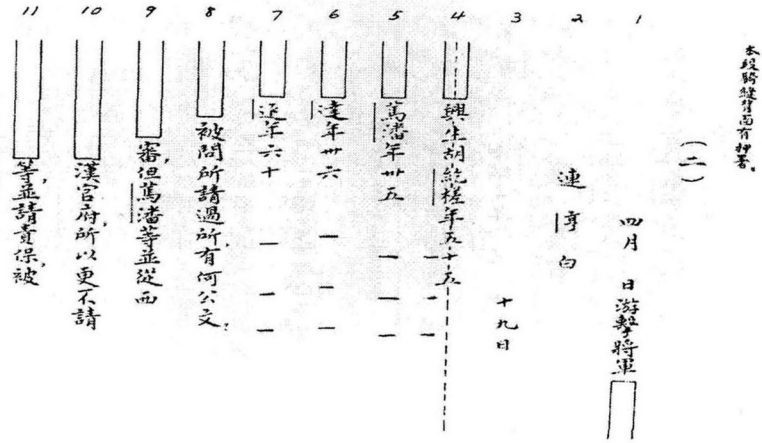

3. <자료3> 64TAM29: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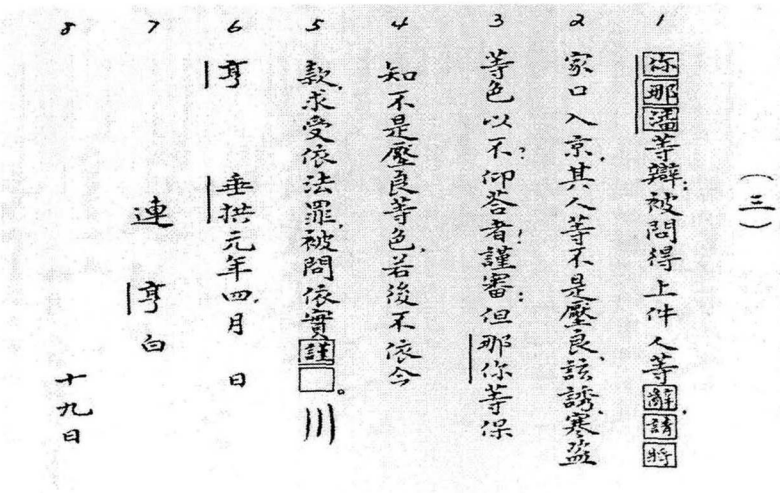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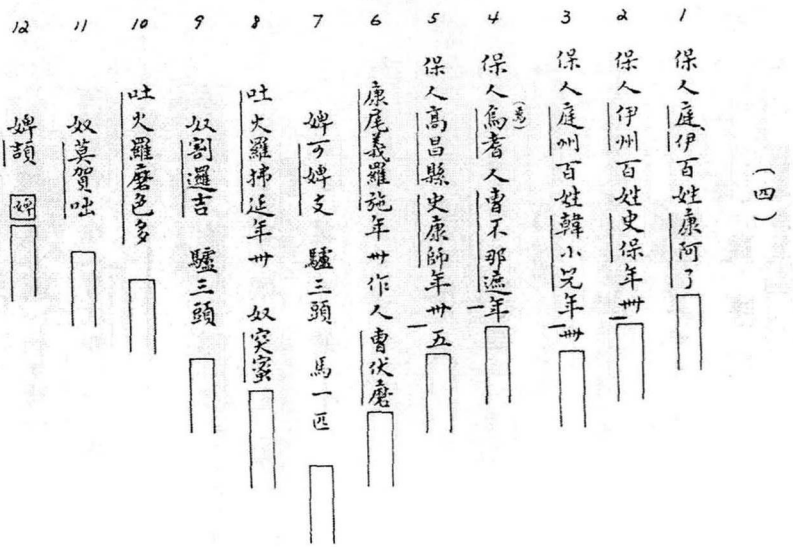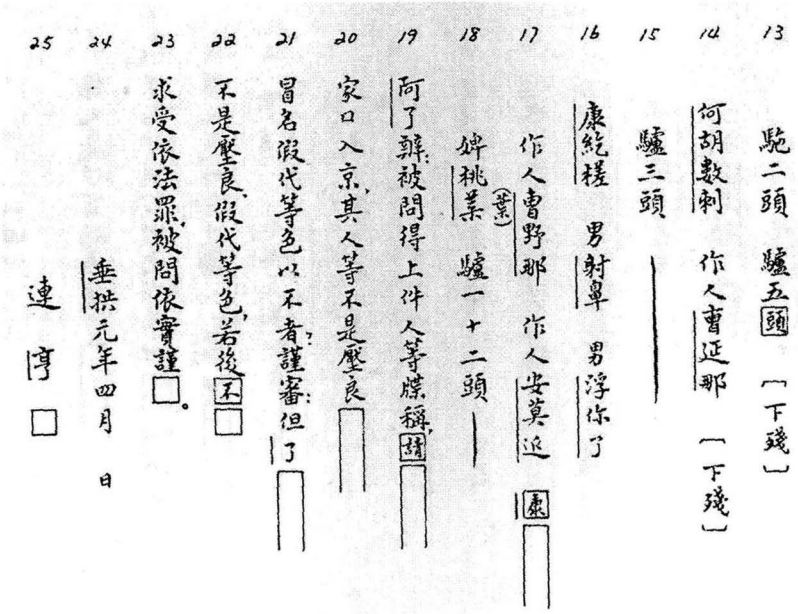
4. <자료4> 64TAM29:24·25